

제2681호
2019. 9. 1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106호 : 경찰기념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2
 제2019-109호 :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6
 제2019-110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7

● 공 고

제2019-6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06호

경찰기념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로 결정된 중구 의주로1가 44-2번지 일대 경찰기념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경찰기념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형물 설치를 통해 경찰정신 함양 및 경찰 역사 홍보를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1가 44-2번지 일대

3. 면 적 : 1,039.0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 별첨

5. 조성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3396-5855)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붙임]

경찰기념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중구 의주로1가 44-2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39.00	207.51				17	1,039.00	198.00				17	
기 반 시 설	소 계	158.01	158.01				158.01	158.01					
	도 로	157.03	157.03				157.03	157.03					
	광 장	0.98	0.98				0.98	0.98					
조 경 시 설	24.17	24.17					31.71	31.71					(증7.54㎡)
휴 양 시 설	25.33	25.33				3	8.28	8.28				3	(감17.05㎡)
운 동 시 설													(폐지)
관 리 시 설						14						14	
녹지 기타	831.49	-					841.00	-					(증9.51㎡)
공원시설율 (20%이하)	(207.51㎡/1,039.00㎡)×100=19.97% (법정 20%이하)						(198.00㎡/1,039.00㎡)×100=19.05% (법정 20%이하)						
공원건폐율 (5%이하)	건축계획없음						건축계획없음						

2. 시설조사

구분	시설명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구조	규모	건축물(m ²)			부호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구조	규모	건축물(m ²)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039.00	207.51					18			1039.00	198.00					17		
기반시설	소계			158.01	158.01								158.01	158.01							
	도로			157.03	157.03								157.03	157.03						-	
	광장	가	의주로1가 44-2번지일대	0.69	0.69					가	의주로1가 44-2번지일대	0.69	0.69								-
		나	의주로1가 44-2번지일대	0.29	0.29					나	의주로1가 44-2번지일대	0.29	0.29								-
조경시설	소계			24.17	24.17								31.71	31.71							
	플랜터																				
	트래리스																				
	조형벽	①	산책로1동측	18.36	18.36					①	산책로1동측	25.90	25.90							(중7.54m)	
	경관열주	②	산책로3동측녹지	5.81	5.81					②	산책로3동측녹지	5.81	5.81								-
휴양시설	소계			25.33	25.33					3			8.28	8.28						3	
	앉음벽	③		25.33	25.33					③			8.28	8.28							(감17.05m)
	평의자	④								(3)	④									(3)	
관리시설	소계									15										14	
	공원등	⑤	전지역							(5)	⑤	전지역									(5)
	블라드등	⑥	전지역							(6)	⑥	전지역									(6)
	CCTV	⑦	산책로5 서측							(1)	⑦										
	음수전	⑧	산책로1 종점							(1)											(1) (빠)
	표지석	⑨								(1)	⑧										(1)
	이용안내판	⑩	산책로2 시점							(1)	⑨	산책로2 시점									(1)
녹지기타	소계			831.49									841.00								
	녹지		전지역	831.49								전지역	841.0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산설						157.03				
폐지	산책로		1	1.3~2.1	15	22.12	잔입로	부지서측	부지동측	
	산책로		2	1.2~2.0	10.2	12.71	연결로	산책로1	휴게소	
	산책로		3	0.8	4.4	3.38	잔입로	부지서측	휴게소	
	산책로		4	0.6~0.8	12.0	9.16	잔입로	부지동측	휴게소	
	산책로		5	2.5	3.2	8.23	잔입로	광장2	휴게소	
산설	산책로		1	1.2	56.3	69.02	잔입로	부지서측	부지서측	
	산책로		2	1.2	29.5	37.80	잔입로	부지서측	부지동측	
	산책로		3	1.2	8.7	10.34	잔입로	부지서측	산책로1	
	산책로		4	1.2	7.5	8.96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2	
	산책로		5	1.2	13.9	16.69	잔입로	산책로2	부지북측	
	산책로		6	1.2	8.7	10.44	잔입로	부지서측	산책로1	
	산책로		7	1.2	3.1	3.78	잔입로	산책로1	부지동측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19-109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주)환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4	(주)환0	관 리 주 체 가 해당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을 요청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제 3 종 시 설 물 로 지정함 (안전등급 E등급)	관리주체께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입니다.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김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5	김00			
(주)종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6	(주)종000			
(주)종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7	(주)종000			
강00,강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9	강00,강00			
이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79	이00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1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충무로2가 62-1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5-12	2019. 9. 18.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4. 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항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98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2016.05.2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추가되어 법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안 제3조)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정신건강사업 수행

라. 사업 관련 사항(안 제4조)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사업 추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마. 운영의 위탁(안 제5조~제10조)

- 시설의 설치·운영, 시설·단체의 위탁 관련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
- 바. 변상책임, 준용, 이용제한 등(안 제11조~제15조)
- 시설물 회손 시 변상책임, 이용제한 대상자,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참조: 의약과, 주소: 서울특별시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02-3396-6382, FAX: 02-3396-8907, 메일: lee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제3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시설, 및 운영제한 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병 환자
-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4조(협조사항) 등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